

<p>Issue No. 2019-10 October 2019</p>	<p>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p>	
---	---	---

국가인권위원회 소식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함)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바, 지난 제126차 회기(2019. 7.1.~26.)에서 대한민국 제5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쟁점질의목록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을 채택하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약식보고절차에 의해 정부보고서 없이 바로 작성하는 주요 이슈 목록을 ‘쟁점질의목록’이라고 하며, 이 쟁점질의목록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서가 정부보고서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권규약 심의와 관련해 2018년 8월 28일 약식보고절차에 동의함에 따라, 당초 2019년 11월 6일 기한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제5차 대한민국 심의 정부보고서는 약식보고절차에 따라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26차 회기에서 채택한 쟁점질의목록 확정 이후 1년 이내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제126차 회기에서 채택된 쟁점질의 목록은 인권상황 및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새로운 조치들,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 견해 이행 절차의 마련 여부,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들에 관한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들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제4차 최종견해 권고(2015. 12. 3.) 및 자유권규약 제1조-제27조 이행과 관련하여, 모두 17개 쟁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보를 요청한 17개의 주요 쟁점 주제는 다음과 같다.

자유권규약 이행을 위한 사법적 구제조치 (자유권규약 제2조), 차별금지 (규약 제2조, 제26조),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규약 제2조, 제7조, 제17조, 제26조), 양성 평등 (규약 제2조, 제3조, 제25조, 제26조), 여성에 대한 폭력 (규약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7조, 제26조), 대테러 방지 대책 (규약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생명에 대한 권리 (규약 제2조, 제6조),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형벌 (규약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 인신매매, 노예제도 및 노예상태 금지 (규약 제3조, 제7조, 제8조, 제14조), 구금 상태 및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규약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부패와 사법 독립 (규약 제2조, 제14조), 사적 통신의 사찰, 감시와 감청 (규약 제17조, 제21조), 양심적 병역거부 (규약 제17조, 제18조), 표현의 자유 (규약 제9조, 제19조), 공무원의 참여권 및 결사의 자유 (규약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평화로운 집회 (규약 제6조, 제7조, 제9조, 제21조), 이주민, 난민, 망명신청자 (규약 제2조, 제3조, 제7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쟁점질의목록은 붙임자료 참고

인권 NGO 소식	유엔 소식
<p>프리덤하우스, 홍콩 민주화 시위 관련 미국 정부, 홍콩정부, 중국정부에 권고안 제시</p> <p>민주주의, 인권 등을 연구하는 미국워싱턴 DC 소재의 NGO 프리덤하우스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이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에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정부, 홍콩정부, 중국정부에 각각 권고안을 제시했다.</p> <p>우선 미국정부에 홍콩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국정부가 군사적 개입을 택한다면 미국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회는 홍콩 인권 및 민주화 법을 통과시켜서 홍콩이 미국 법에 따른 특별한 경제적 대우를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매년 자격요건을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p> <p>홍콩정부에 대해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을 자제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평화적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공격하는 경찰을 조사,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정부에 홍콩정부가 중국인민군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p> <p>중국정부는 “일국양제 (one country, two systems)” 모델을 존중하고 폭력집단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하는 등 중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홍콩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내 언론 보도나 웹사이트를 검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p> <p>프리덤하우스는 지난 10년간 중국정부의 홍콩에 대한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서 홍콩의 민주주의가 쇠퇴했음을 지적하고, 국제사회가 홍콩사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국, 아시아의 이익을 해치고 나아가 향후 중국공산당의 도발을 조장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http://freedomhouse.org/report/special-reports/democratic-crisis-hong-kong</p>	<p>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유해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p> <p>바스쿠트 툰작 (Baskut Tuncak) 유해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보장되는 권리임에도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특권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p> <p>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270만 명의 근로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p> <p>특별보고관은 실제로 한국에서도 2007년 소비재 생산 작업장에서 5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p> <p>특별보고관은 15개의 원칙을 담은 보고서를 2019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 제42차 회기에 제출했다. 이 원칙은 국가, 기업, 그 밖의 핵심 관계자들이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p> <p>15개 원칙 중 7개는 예방과 관련된 것이다. 원칙 8-11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와 정보, 참여, 집회의 권리의 상호연관성을 반영하고 있다. 나머지 네 개의 원칙은 피해 근로자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p> <p>인권이사회는 42차 회기에서 국가, 기업, 그 밖의 관계자들이 법적 체계와 정책을 통해서 15개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은 국가가 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할 의무가 있고, 기업도 상응하는 의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p> <p>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FifteenPrinciplesProtectWorkers.aspx <small>※특별보고관 보고서는 붙임자료 참고</small></p>

기 획 특 집

행 사 일 정

APF 회원기구들의 2018-2019 주요사업—
이라크, 말레이시아 국가인권기구

2019년 9월 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연례회의에서 각 회원기구들은 2018-2019년도의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는 (Iraqi Hig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인권관련 전공을 가르치는 국내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인권운동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권존중 문화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등사법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방부, 대테러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관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법률사건 조사 교육을 실시하면서 법집행기관의 국제인권조약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는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2018-2019년도에 장애인권리, 양성 평등, 인종차별 및 혐오발언 금지를 중점분야로 채택했다.

특히 헌법상 시민권자만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주민 관련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 간담회, 인권교육, 법집행관 교육, 재판관 세미나 등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http://www.asiapacificforum.net/resources/>

2019년 10월 유엔 주요회의 일정

날짜	회의
10/14-11/8	자유권위원회 제127차 회기
10/21-11/1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정부간 실무 그룹 제17차 회기
10/21-11/8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74차 회기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